

## 특별한 우리아이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 Part 20. 재평가 (Re-Evaluation)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수확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과일과 곡식의 상태를 살피고 걸맞은 비료를 주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해 성장하고 변화하는 우리아이가 성공적인 학습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기 적절한 재평가와 필요한 학습적 지지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종합적인 재평가를 최대한 1년에 한번, 최소한 3년에 한번씩은 제공할 것을 학교측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학교측이 동의하는 경우 이와 같은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드리는 재평가란 **educational assessment** (아이의 현재 읽기, 수학, 철자 및 언어 등의 학습 수준을 평가), **psychological assessment**, **speech/language assessment**, **vision and hearing assessment**, **behavior assessment** 등을 포함하는 총괄적인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생은 1년에 한번씩 재평가를 받고 또 다른 학생은 3년이 지나도록 재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매년 재평가를 받는 학생은 아주 드뭅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서 1년 전의 평가 결과가 현재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부모가 강력히 재평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보다는 3년이 지나도 재평가를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것이 더 흔한 것이 아쉬운 현실입니다. 요즘 학교측에서 3년마다 실행해야 하는 **Triennial evaluation**을 건너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법에서 말하는 재평가의 목적은 크게 (1) 아이가 계속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가; (2) 아이의 현재 학습적 필요 (**Educational needs**)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것 입니다. 학교측에서는 이미 아이를 가르치고 있고 일반적인 시험이나 과제물 평가를 통해 아이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학교측에서는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모되는 종합적인 재평가를 하지 않고서도 위에 언급된 두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부모의 의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평가를 건너 뛰거나 심지어는 재평가를 원한다는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평가를 거부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특수교육법의 근본적 취지와 내용에 너무나도 어긋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이가 이미 특수교육을 받고 있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아이가 계속 특수교육이 필요한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종합적 재평가가 필요 없다는 학교측의 의견이 대부분 옳은 것이 사실이지만 재평가 없이 아이의 **Educational needs**를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옳지 않습니다. 아이가 현재

학교에서 학습적, 또는 사회적으로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다면 특히나 더 재평가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재평가는 일반 시험이나 과제물과는 달리 아이의 현 상태를 지적, 심리적, 기능적으로 평가하므로 일상생활에서 놓치고 있던 정보를 제공하거나 뭔가 풀리지 않던 매듭의 실마리를 볼 수 있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자라나는 아이에게 꽤 긴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정확한 평가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성공적인 학습내용을 설계하는데 필수적입니다.